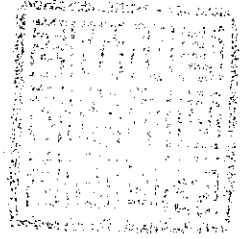


부속선운항관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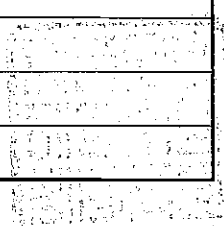
나 폴 리 호

(주)남해고속

개 정 이 력

○선명:나폴리호 (상태도 부속선)

개정일자	개정항목	변경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18.05.31.	운항관리표지	남해프린스호	삭제	항로변경
“	제8조 2항	운항관리센타247-9466	247-9457/9458	수정
“	“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122/119)	누락, 추가함
2018.06.06	제2조1항	중선운항통제관	삭제	선임되어있지않음
“	제8조 2항	247-9457	247-9466	확인유지
2020.07.03	[별지 제8호 서식]	선명 : 남해스타, 남해퀵, 남해엔젤, 팡크돌핀	선명 : 남해퀵, 남해엔젤, 팡크돌핀, 뉴퀵으로 변경	남해스타호 말소 뉴퀵호 신규투입
2021.3.31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 체계에 관한사항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중선) - - 삭제	본선 (쾌속선) 【비상상황 연락기관】 으로 일치되게 변경	【비상상황 연락기관】 : 본선과 일치
2022.07.01	별지 제8호 서식	선박 진수일 : 1992.12.01	선박 진수일 : 1992.07.11	진수일자 변경
	붙임 : 각종증서	어선검사증서(2020.7.25.) 및 어선특별검사증서(2018. 10.31.) 유효기간 Over	어선검사증서(2025.7.28.) 및 어선특별검사증서(2022. 12.31.) 재교부로 교체	어선검사증서 재발급으로 교체
2022.12.7.	제목	중선운항관리규정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개정이력	선명:ooo호(oo도 중선)	선명:ooo호(oo도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1조	중선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2조 선박운항기준	①②항 중선	①②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4조 여객 승·하선	①②⑤항 중선	①②⑤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5조 선박운항	①②항 중선	①②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6조 운항관리	③항 1,2,3. 중선	③항 1,2,3.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8조 유사 시 긴급 보고체계에 관한사항	중선 3. 중선	부속선 3.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9조 기타사항	① 중선	①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부속선 운항관리 규정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객선 (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육지간 여객의 중계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부속선 “나폴리호”의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 ① 부속선 선장은 출항전 또는 운항중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부속선 운항이 불가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에 통보하고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선선장은 운항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부속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와 협의하여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항통제기준 : 초쾌속선과 동일

제 3 조 : 운항항로(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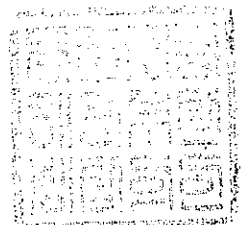
- ① 운항구간 : 흑산면 상태도리항으로부터 약 1km(접선반경 약 500미터)
단,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서 요청하는 지점에서 접안할 수 있다.
- ② 운항거리 : 500m이내
- ③ 운항시간 : 5~10분 이내
- ④ 항로수심 : 3m~30m
- ⑤ 항해장애물 : 없음.

제 4 조 : 여객 승·하선 (본선과의 견현 높이차 30Cm이내)

- ① 여객의 승하선시는 부속선선장 및 본선선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한다.
- ② 여객은 정원범위 안에서 승선할 수 있으며 승선인원은 본선선장이 확인하고 통제한다.
- ③ 여객은 승선 즉시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도록 한다(여객배치도 별첨)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지정된 선착장을 이용한다.
- ⑤ 부속선선장은 출항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보관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운항구간의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 ⑥ 부속선선장 및 본선선장은 부속선의 안전성 및 복원성을 감안하여 정원승선 또는 적량화물을 적재토록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위험물 적재금지)

제 5 조 : 선박운항

- ① 출항 준비사항



부속선선장은 출항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

② 운항종료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

1. 운항종료 후 상태도리항 선착장(석축부두)에 계류.

2. 부속선 안전관리 책임은 선주(선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기상악화 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 흑산도항으로 피항 또는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 운항관리

①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1. 정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차례 증회 운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객정원만이 승선 했을지라도 여객 휴대화물의 적재에 따른 복원성을 감안하여 승선인원을 적절히 감원 승선 시켜야 한다.

② 출항전 점검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1항(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선장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선박회사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보완 조치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③ 부속선운항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1. 부속선 선장은 본선 선장과의 상호안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부속선 선장은 중선에 특이사항 발생시는 지체 없이 본선 선장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속선 선장은 여객의 승하선시 및 부속선 운항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 부속선 정비 및 점검

① 부속선 선장은 법정검사시 철저한 정비후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운항한다.

② 안전시설,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은 출항전 점검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③ 사업자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2항(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월1회 이상 부속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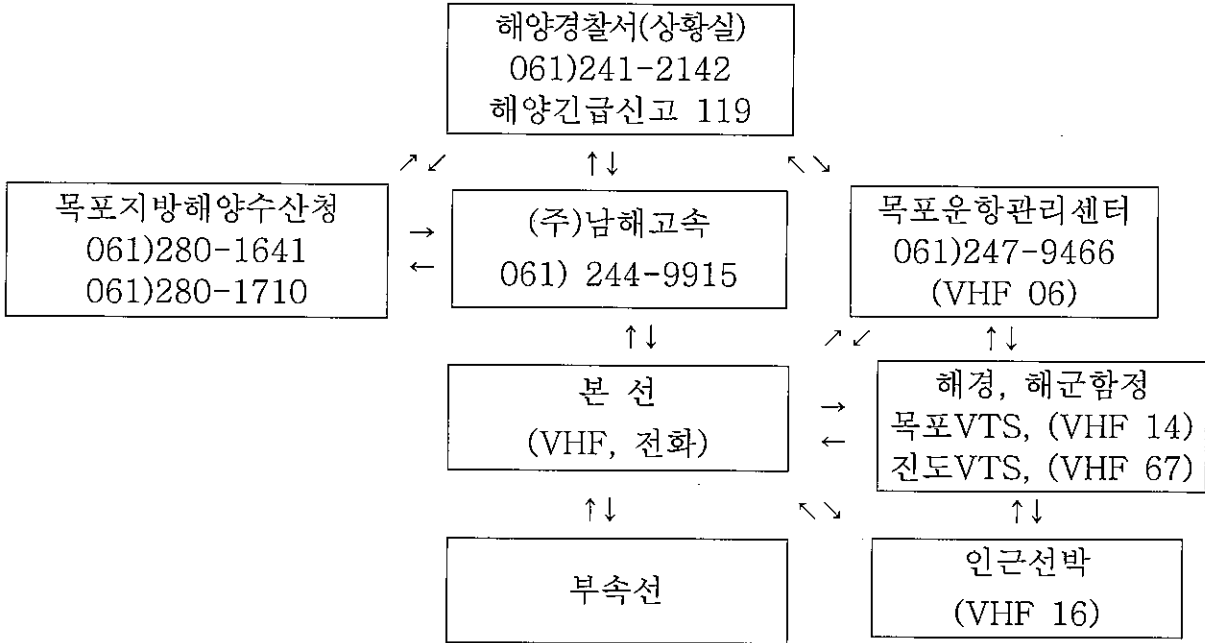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2.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비상상황 연락기관】



3. 비상시 종선과 본선과의 연락은 통신기(VHF)와 휴대전화 등으로 한다.
4.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에 통보
5.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기록유지
6. 피해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 기타 사항

- ①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부속선 및 본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사본을 부속선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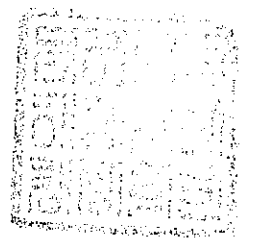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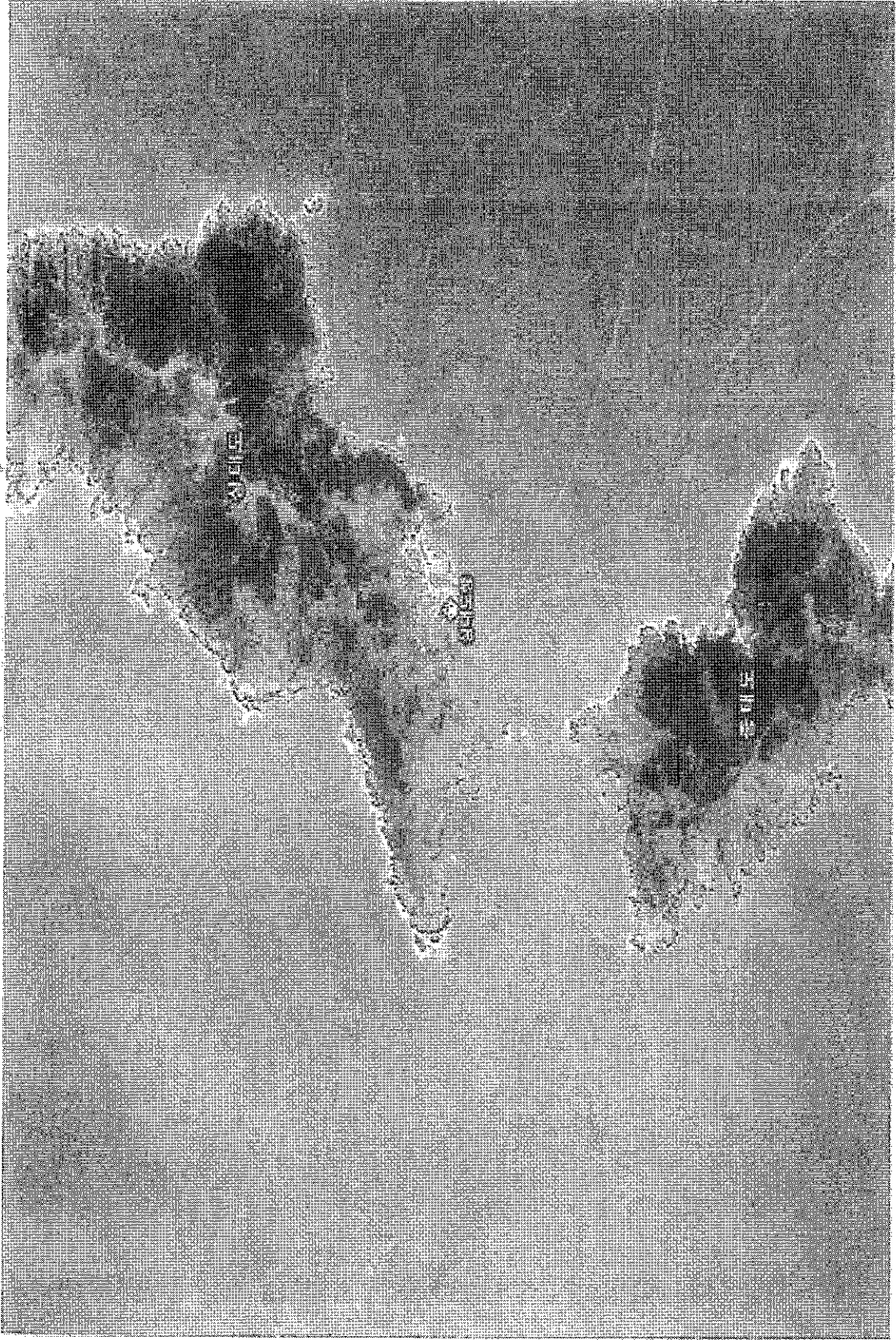
붙임 :

- ① 운항항로
- ② 여객배치도
- ③ 어선특별검사증서
- ④ 어선검사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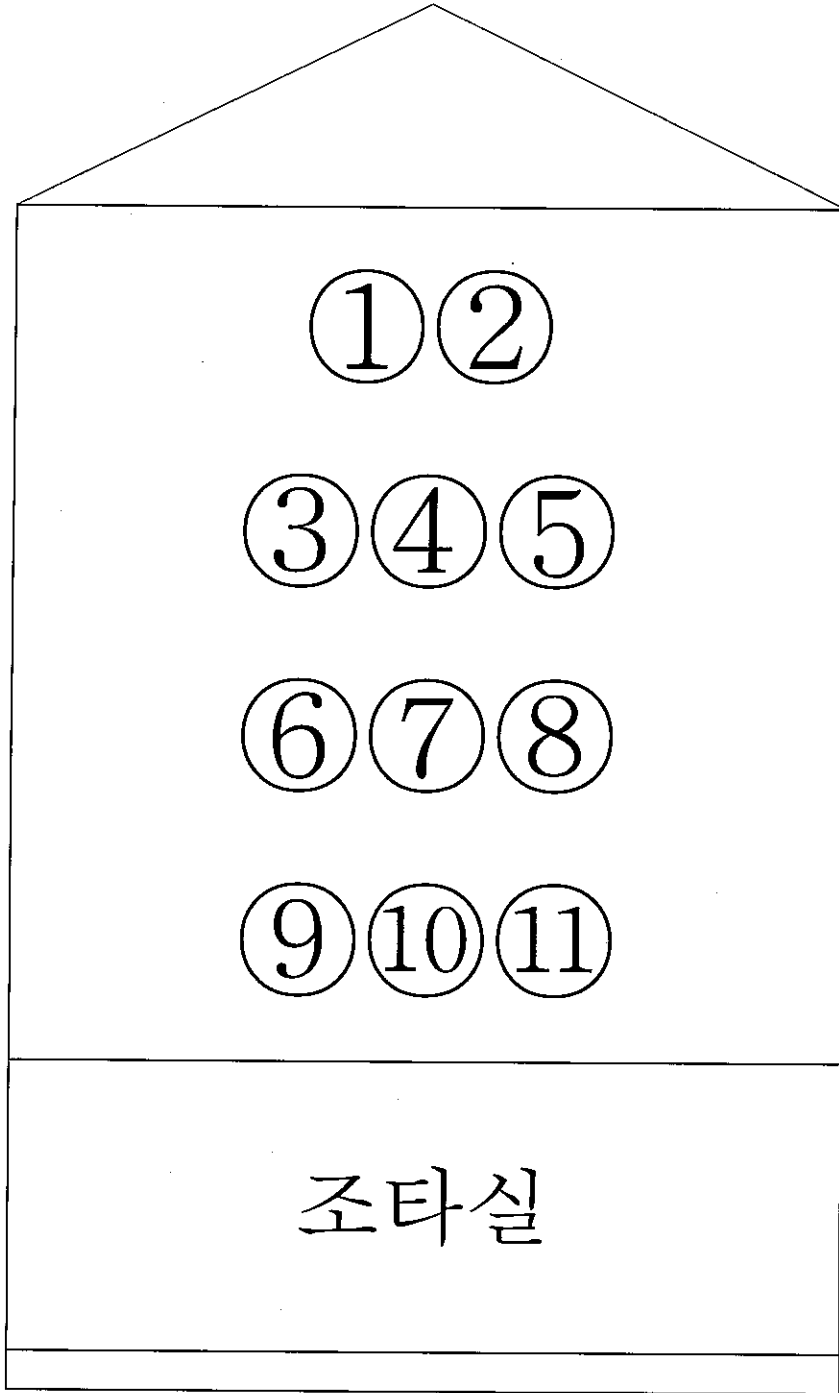


[별첨1] ① 운항항로

[별첨 1] 운항항로
○ 기항지명 : 흑신면 삼태도
○ 풍신면 : 나폴리호



여객배치도



부속선명 : 나폴리호



④ 어선특별검사증서

■ 어선검사규칙 (별표 제63호서식)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제 MF-22-04202
Certificat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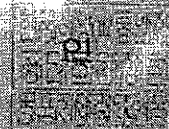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사물리호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2007011-6469102		
선속 Ship's Material	FAP	총톤수 Gross Tonnage	731톤		
어선의 종류 Type of Fishery	어선(어간관리선)				
추진기관 Main Engine	디젤기관	기관 Type	220 [kW]	300 [PS]	1대
배의 길이 Ship's Length	10.50 미터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무선 전화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12 인 (어선원 P 1 Crew)	I 인	어선원 외의 사람 P Other Personnel:		11 인)
항해에 관련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장비기준 제60조 (별표4)에 따라 어업용 및 해마다박사기의 설치물 연계를 하고 있다(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해를 금지함. - 선원칙 외의 사람은 어업선에 탑승 또는 하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함. - 본 선박정보센터 사고 제201호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어업선이 도착한 사실을 기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어선원의 사용을 금지함.				
유효기간 Validity	2022년 05월 20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경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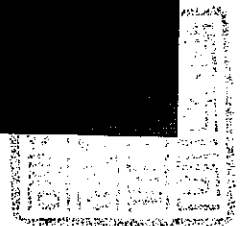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년 03월 20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10mm x 297mm (보존용지(1중) 220g/㎡)



③ 어선검사증서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배 번호 (Vessel No.) 40-200-00000			
선박명 (Name of Ship) 신발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PRP	고유번호 (Original Number) 100	총톤수 (Gross Tonnage) 300
선박의 종류 (Type of Fishing Vessel) 어선 (비정규어선)	엔진명 (Name of Engine) 시멘트엔진	배의 길이 (Ship's Length) 10.50 m	엔진의 출력 (Engine Power) 100 kW
선박의 총톤수 (Gross Tonnage) 300	배의 길이 (Ship's Length) 10.50 m	엔진의 출력 (Engine Power) 100 kW	배의 폭 (Ship's Beam) 3.00 m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수 (Number of Crew Members for Navigation) 10명 (10 persons)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수 (Number of Crew Members for Navigation) 10명 (10 persons)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수 (Number of Crew Members for Navigation) 10명 (10 persons)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수 (Number of Crew Members for Navigation) 10명 (10 persons)			
유효기간 (Validity) 2020년 07월 28일 부터		유효기간 (Validity) 2025년 07월 28일 까지	



이 증명서는 해양수산부령 제 100호 어선검사증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이 증명서 발급규정에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 of the Fishing Vessel Act and Article 10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년 07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